기획 - 감사

2016. 4.

- 대술면 종합감사 -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예 산 군

목 차

□ 감사실시 개요

□ 감 사 성 과

□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 처분지시서

2016년 대술면 종합감사 결과

☐ 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 : 2016. 3. 16(수) ~ 3. 18(금) / 3일간

○ 감사범위 : 2014. 3. 26 ~ 2016. 3. 15 / 2년간

○ 감 사 반 : 5명 (감사팀 3, 차출감사관 2)

구분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감사대상 업무	비고
반장	기 획 실	감사팀장	박 흥 돈	총괄(시책 등 주요사항)	
반원	주민복지실	기초생활팀장	박 승 보	사회복지	
〃	농 정 과	과수특작팀장	임 병 기	농・축・산림	
〃	기 획 실	행정 7급	방 석 영	세출, 계약, 일반	
〃	기 획 실	시설 7급	류 재 성	건설, 도시, 재난	

○ 감사중점사항

-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업무 전반
- 세출, 물품관리, 각종 공사 적법처리 여부
- 복지, 농·축산업, 산업분야 등 대민업무 추진사항 등
- 우수사례 발굴

□ 감사성과

○ 행정상 조치

(단위 : 건)

지적사항					제도개선	우수사례	비고
계	시정	개선	주의	현지조치			
10	3	-	7	-	-	-	

○ 재정상 조치

(단위 : 천원)

계	추징	회수	감액	비고
39	-	39	-	-

○ 신분상 조치

(단위 : 명)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	주의
-	-	-	-	-

▢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

(단위 : 건, 천원)

일련번호	소 관	제 목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	시정	주의	기타	계	추징	회수	감액
계		10건	10	3	7		39		39	
1	총무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절	1		○					
2	총무팀	공공운영비 집행 부적절	1		○					
3	총무팀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미접수	1	○						
4	총무팀	회계 관계서류 작성 부적절	1		○					
5	총무팀	건설공사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부적정	1		○					
6	총무팀	건설공사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적정	1	○			39		39	
7	주민생활지원팀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업무소홀	1	○						
8	주민생활지원팀	취약계층 운전면허 취득지원 사업추진 소홀	1		○					
9	산업개발팀	지방재정 조기집행 업무 소홀	1		○					
10	산업개발팀	산불예방 업무 소홀	1		○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NO. 1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총무팀	2015	주의			

【제 목】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절

가. 현 황(처리내용)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절 현황 (단위 : 원)

적 요	집행일자	거 래 처	예산과목	지급금액	비고
제42대 면장 취임식 후 직원 및 기관단체장 중식비	2015. 7. 3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18,000	

나. 위법부당 내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소속직원의 사기양양을 위한 경비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대술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5. 7. 3일 제42대 신임면장 취임식 후 소속직원뿐 아니라 소속직원이 아닌 기관단체장들에게 중식을 대접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18,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다. 처분지시

○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도록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NO. 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총무팀	2015	주의			

【제 목】 : 공공운영비 집행 부적절

가. 현 황(처리내용)

○ 공공운영비 집행 부적절 현황 (단위 : 원)

적 요	집행일자	거 래 처	예산과목	지급금액	비고
청사 및 창고 도색	2015. 4. 27	(주)★★★★	공공운영비	4,400,000	

나. 위법부당 내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등에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하천의 개보수, 청사의 대규모 도장 등 그 내용연수가 길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규모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확보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대술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5. 4. 27일 청사 및 창고 도색 공사를 하면서 별도의 시설비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공공운영비 4,400,000원으로 공사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

다. 처분지시

○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NO. 3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총무팀	2015	시정			

【제 목】 :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미접수

가. 현 황(처리내용)

○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미접수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지급일자	지급금액	업 체 명	채권 미매입액	비 고
합 계	5건	39,974,870		940,000	
2015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마전1리 배수로 정비공사 벤치플륨관	2015.4.21	4,938,400	*****	70,000	물품
2015 대술 시산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2015.6.3	8,827,000	㈜**	220,000	공사
대술면입구 새마을 깃대 설치공사	2015.6.24	3,300,000	****	80,000	공사
2015 주민숙원 마전리 농로포장 공사	2015.12.2	18,709,470	****(주)	465,000	공사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 설치사업	2015.12.22	4,200,000	㈜**** *****	105,000	공사

나. 위법부당 내용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별표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은 1.5/100, 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의 2.5/100에 상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대술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5년 소규모주민생활편익 마전1리 배수로 정비공사 벤치플륨관 구입 외 4건 39,974,87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자로부터 940,000원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받지 않고 대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다. 처분지시

○ 도급자로부터 940,000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징구하도록 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NO. 4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총무팀	2014 ~ 2015	주의			

【제 목】 : 회계 관계서류 작성 부적절

가. 현 황(처리내용)

○ 붙임 : 대술면 회계 관계서류 작성 부적정 현황

나. 위법부당 내용

○ 예산군 재무회계규칙 제121조(계약의 체결) 제3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 서식부터 별지 제50호 서식 까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결의서(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대술면에서는 붙임 현황과 같이 2014년 하계 연막소독용 유류 외 5건 19,809,180원을 집행하면서 물품구입 계약임에도 규정에 맞지 않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회계 관계서류 작성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다. 처분지시

○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붙임】

회계 관계서류 작성 부적절 현황

【단위 : 원】

구 분	적 요	원인행위	업 체 명	계약금액	부적절 내용	비고
	6건			19,809,180		
물품	하계연막소독용 유류	2014.4.29	*********	2,928,000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물품	복지회관 연료	2014.12.27	*****	1,555,660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물품	제42회 윤봉길문화축제를 위한 단체복 및 수건구입	2015.5.11	**** *****	2,050,000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물품	컴퓨터 프린터기 및 복사기 토너	2015.8.10	㈜*****	1,862,000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물품	2015년 방역 연막소독용 유류비	2015.9.23	********	1,898,520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물품	제29회 군민체육대회 단체 피복비	2015.10.16	*****	9,515,000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NO. 5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총무팀	2015	주의			

【제 목】 : 건설공사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부적절

가. 현 황(처리내용)

공 사 명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예정금액(천 원)			퇴직공제 부금비(원)	비고
			합계	도급	관급		
2015 주민숙원 시산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L=82m, B=3.0m 수로관(D500) L=70m	2015.10.19. ~2015.11.27.	16,530	11,090	5,440	83,621	

※ 퇴직공제부금비는 준공 정산 시 증빙서류 미제출로 전액 감액 정산

나. 위법부당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 또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그런데도, 대술면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 가입 대상공사가 아닌데도 2015 주민숙원 시산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산정하면서 퇴직공제부금비를 계상한 사실이 있음.

다. 처분지시

○ 관련법규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NO. 6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총무팀	2014	시정	회수	39,890	

【제 목】 : 건설공사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적절

가. 현 황(처리내용)

○ 사 업 명 : 2014 이티2리 소규모 암거 정비공사

(단위 : 원)

구 분	최초계약금액	변경계약금액	준공정산액	정당정산액	차 액	비고
국민건강보험료	104,804	116,188	-104,804	-116,188	11,384	
국민연금보험료	153,507	170,181	-153,507	-170,181	16,67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864	7,610	-6,864	-7,610	746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31,087	34,619	-31,087	-34,619	3,532	
일반관리비	808,027	892,530	-17,776	-19,715	1,939	
이 윤	574,848	713,774	-18,748	-20,742	1,994	
부가가치세	1,485,000	1,648,182	-33,279	-36,905	3,626	
정산금액 계			-366,065	-405,960	39,895	

나. 위법부당 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기성과 준공에 따른 대가지급 시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 그런데도 대술면에서는 2014 이티2리 소규모 암거정비공사 시행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증액 조정 되었는데도,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금액 조정 전 보험료 등의 금액을 대상으로 정산하여 위와 같이 39,890원에 대해 정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다. 처분지시

○ 미정산된 보험료 39,890원을 회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7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주민생활 지원팀	2016	시정			

【 제 목 】: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업무소홀

가. 현 황

○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현황 (2016. 3. 17.기준)

구 분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 가구수			정부양곡 할인신청서 징구 가구수			정부양곡 할인신청 홍보실적 (횟수)
	계	생계·의료 급여 대상	차상위계층	계	생계·의료 급여대상	차상위계층	
대술면	30	12	18	0	0	0	1

나. 위법부당 내용

○『2016년 자활사업 안내(Ⅰ권)』 p136~p143에 명시된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지침에 의하면, 정부양곡 할인지원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양곡구입 신청자로부터 신청서 접수 및 대장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 대술면에서는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 안내문을 2015.01.29. 1회 발송하였으며, 신청대상자로 부터 〔자활서식 42호〕 및 〔자활서식 43호〕에 의한 서면 신청을 받지 않고 유선 통화 및 구두로 정부양곡 할인신청을 받아 행복e음(사통망)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다. 처분지시

○ 정부양곡 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8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주민생활 지원팀	2014~2016	주의			

【 제 목】: 취약계층 운전면허 취득지원 사업추진 소홀

가. 현 황

○ 추진배경

- 운전면허 취득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자활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행복·희망 새 시대』국정비전에 적극 동참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정부 3.0』정책 실천을 위해 2014.07.23.예산군과 도로교통공단 예산운전면허 시험장이 업무협약을 통해 무료 운전면허 취득 지원

○ 관련근거

- 운전면허 취득지원 홍보(주민복지실-51632(2014.08.18))
- ’16년 운전면허취득 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알림(주민복지실-17314(2016.03.09))

나. 위법부당 내용

○『취약계층 운전면허 취득지원 사업 운영계획에 의거 읍·면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지원 사업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여 매월 20일까지 교육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함에도.

- 대술면에서는 2014 8월부터 현재까지 공문시행 1회(운전면허 취득지원 홍보(대술면-6819호(2014.08.18.), 이장회의자료 1회(2016년 3월) 등 총 2회만 홍보하고, 교육대상자도 1회(운전면허 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대술면-6507호(2015.08.26.)) 추천하는 등 취약계층 운전면허 취득지원 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다. 처분지시

○ 취약계층 운전면허 취득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람.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9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산업개발팀	2016	주의			

【 제 목 】: 지방재정 조기집행 업무 소홀

가. 현 황

사 업 명	관련호	제출기한	제출일자
2016벼공동육묘장지원사업추진계획알림	농정유통과-3798	2016.3.15	-
2016소형농기계(충전식분무기)지원사업대상자확정 및보조금지원계획알림	농정유통과-3803	2016.3.15	-

나. 위법부당 내용

○ 2016년 농업분야 보조금지원사업의 신청서 및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 기일까지 제출 하여야 함에도,

- 대술면에서는 위 2건에 대하여 제출 기일을 지연하여 보조사업의 수혜자인 농업인의 농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 특히 정부에서 국가경제 활력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다. 처분지시

○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10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산업개발팀	2016	주의			

【 제 목 】: 산불예방 업무 소홀

가. 현 황

리	소 각 대 상			소각예정일자	산림연접지(논·밭두렁)		
	개소	km	ha		개소	km	ha
19	77	49	38	2.15~3.4	77	49	38
화천1	3	2	1	2월 18일	3	2	1
화천2	3	1	1	2월 17일	3	1	1
화천3	1	1	1	2월 22일	1	1	1
농리	3	2	1	2월 15일	3	2	1
상항	4	4	3	2월 25일	4	4	3
방산	10	7	3	2월 23일	10	7	3
장복1	1	1	2	2월 24일	1	1	2
장복2	4	5	3	2월 29일	4	5	3
송석	5	4	3	3월 3일	5	4	3
화산	4	3	2	2월 23일	4	3	2
궐곡1	8	5	3	2월 18일	8	5	3
궐곡2	1	1	1	2월 22일	1	1	1
시산1	5	3	2	2월 24일	5	3	2
시산2	2	1	1	2월 17일	2	1	1
산정	1	1	1	2월 29일	1	1	1
마전1	10	1	3	3월 4일	10	1	3
마전2	1	1	1	2월 18일	1	1	1
이티1	10	5	5	3월 2일	10	5	5
이티2	1	1	1	2월 22일	1	1	1

나. 위법부당 내용

○ 산림축산과-31925(2015.12.31)호및 대술면-463(2016.1.15)와 관련 산불예방을 위하여 봄철 산불 주원인인 논·밭두렁 소각을 위한 산불취약지 인화물질 제거 사업대상지에 대하여는 일정에 맞게 추진하여야 함에도,

- 대술면에서는 화천1리 외 18개리에 대한 인화물질 제거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다. 처분지시

○ 도로점용 허가시 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